

저작권 등 대리중개 계약서

사단법인 한국안무협회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(와) _____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“을”의 권리(안무저작권 등; 이하 “저작권 등”이라 한다)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의 목적은 “을”의 권리와 관련한 저작물, 출판물,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(안무저작물 등)과 데이터베이스(이하 “저작물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대리중개행위를 “갑”에게 위탁함에 있어, 그 범위와 권리·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1. 저작재산권 :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, 저작권법상 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,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말한다.
 - 1-1. 저작물 : “저작물”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
2. 출판권 : 복제권자(저작물을 복제·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)와의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복제권자의 출판권설정행위에 의하여 출판자에게 설정된 권리를 말한다.
 - 2-1. 출판 :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·배포하는 것을 말한다.
3. 저작인접권 : 실연자,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한다.
 - 3-1. 실연자의 권리는 복제권, 배포권, 대여권, 공연권, 방송권, 전송권,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관한 보상청구권,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등 실연자의 재산권을 말한다.
 - 3-2.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복제권, 배포권, 대여권, 전송권,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,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을 말한다.
 - 3-3.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복제권, 동시중계방송권을 말한다.
4. 데이터베이스제작자 :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·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.
 - 4-1. 데이터베이스 :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.
5. 저작권대리중개 : 저작재산권자·출판권자·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 권리자와 제3자인 이용자와 사이에 그 권리의 대상인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(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)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5-1. : 저작권 등 대리업자란 저작권자 등 권리자 본인을 위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등의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그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즉, 업으로서 하는 저작권자등 권리자의 대리인을 말한다.
 - 5-2. : 저작권 등 중개업자란 저작권자등 권리자를 위하여 저작물 등의 매매 기타 거래계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저작물 등 거래의 의뢰를 받아 제3자인 이용자와 사이에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는 자 즉, 업으로서 하는 저작권 등 권리자의 중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대리 또는 중개에 의한 위탁관리범위)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저작권 등의 이용에 대한 대리·중개 업무를 위탁한다.
- ②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위탁한 저작권 등 대리중개업무에 대한 권한은 “갑”이 독점으로 가진다.
- ③ “을”의 저작권 등에 대한 “갑”의 대리중개업무의 계약지역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한다.
- ④ “갑”은 “을”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제3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4조(진술 및 보증)

-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한 것임을 보증한다.
- ① 본 계약의 대상인 저작권 등 권리에 대하여 “을”이 유일한 권리자이며, 본 계약의 이행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다.
 - ② “을”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등 권리가 다른 제3자의 저작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,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받는데 어떠한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과 합의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저작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공한 저작물 등을 이용한 대리중개 및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“을”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“갑”은 “을”의 권리 등의 이용에 대한 대리중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, “을”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한다.
- ④ “갑”은 “을”의 저작권 등을 이용한 계약정보 및 발생수익에 대하여 “을”의 자료 요청시일 최소 3개월 안에 응한다.

- ⑤ “갑”은 “을”을 위하여 대리중개인으로서 관리를 하는 동안 저작권 등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침해사실을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임의로 민·형사상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실질적 합의가 있을 경우 민·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⑥ “갑”은 “을”의 사전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와 저작물이용계약을 대리중개하면서 이용자들을 차별하거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
- ⑦ “갑”은 “을”과 사이에 주무관청에 신고한 약관에 의하여 저작권대리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또 “갑”은 이용자와 사이에 주무관청에 신고한 약관에 의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탁업무대상)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본 계약의 위탁관리대상인 저작물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전부 위탁한다.
- ② “을”과 “갑”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개로 상호 협력 하에 위탁관리업무를 정하기로 한다.
- ③ “을”은 상호협력하에 위탁 관리한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하여 해지할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한다.

제7조(사용료 지급 및 통지의무)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을 대리 중개하여 이용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(Royalty)를 지급받을 수 있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매월 발생된 사용료에 대한 수령내역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 후 31일 이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“갑”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사용료로부터 “갑”이 미리 지출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.
- ④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사용료지급일에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한 때부터 지급을 다할 때까지 년리 1.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“갑”이 이용자로부터 미니멈 개런티(MG)를 받은 경우, “갑”은 이를 즉시 “을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⑥ “갑”은 이용자가 사용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그 지체사실을 즉시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 지급)

- ① “갑”과 “을”이 대리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정한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과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 등 이용허락계약을 대리중개한 때 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“갑”은 사용료 중에서 관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미리 충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의 요청 시 그 총당한 비용내역을 수수료 지급청구를 할 때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“갑”이 “을”을 대리하여 관할 관청에 저작권 등을 등록할 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동액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.
- ⑤ “을”의 요청 시 “갑”은 수수료 지급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, “갑”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- ⑥ “갑”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로서 미니멈개런티(MG)를 우선 지급받은 경우는 “갑”은 미리 “을”에게 지급받을 수수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9조(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 등)

- ① 본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“을”과 “갑”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“갑”의 위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리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(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)

-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②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1조(비밀유지의무)

- ① “갑”은 본 계약의 대리중개과정에서 알게 된 “을”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, “을”의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.
- ② “갑”은 스스로 또는 그 직원이 본 계약의 대상인 저작권 등 권리의 대리중개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“을”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제12조(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)

당사자는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3조(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등)

- ① “을”과 “갑”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위반한 경우, 타방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계약위반의 취지를 최고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,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위 제4조의 보증에 대하여, “을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등 “갑”이 본 계약상

대리 또는 중개 업무를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4조(계약의 해지, 불가항력)

- ① “을” 또는 “갑”은 상대방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협의하여야하며,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다.
- ② “을”과 “갑”은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1. 회생절차의 개시결정
 - 2. 파산선고
 - 3.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지급의무를 상당한 기간 내에 다하지 못한 경우
 - 4.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③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, 정부의 조치, 법률의 명령, 국가비상사태, 폭동, 전쟁, 기타 “을”과 “갑”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그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④ 위 항의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의 연장 및 계약 내용의 변경을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한다.

제 15조(계약의 종료)

- ① 저작권대리계약의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, 대리인의 금치산·파산한 경우 및 기초적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 소멸한다.
- ② 저작권중개계약의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저작권 등 이용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중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의 중개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6조(신의성실)

“을”과 “갑”은 본 계약에 정한 각 조항을 신의성실로 이행하여야 하고, 본 계약에 정한 사항 및 본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 등 법령에 정한 바 이외에는 성실하게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, 그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17조(관할 법원)

당사자 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서울 서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 18조(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)

본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이상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 년 월 일

“갑” (대리중개인)

“을” (창작물권리자)

주 소 :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42나길 2

주 소 :

등록번호 : 106-82-16859

생년월일 :

단체명 : 사단법인 한국안무협회

印

성명 :

印